

「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」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4조의2(대출계약철회) ⑦ <신설></p>	<p>제4조의2(대출계약 철회) ⑦ <u>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채무자에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.</u></p>	<p>채무자의 대출계약철회 의사표시 불명확시 금융회사 설명 및 의사확인 의무 신설</p>
<p>제23조의2 (금리인하요구권)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, 서면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1.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: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또는 <u>신용평가등급</u>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(개인사업자 포함) : 재무상태 개선 또는 <u>신용평가등급</u>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	<p>제23조의2 (금리인하요구권)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, 서면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1.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: 취업, 승진, 재산 증가 또는 <u>개인신용평점</u>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.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 (개인사업자 포함) : 재무상태 개선, <u>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</u>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	<p>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</p>